

# 원흥성광교회 선교 규정(안)

Rev.0 2022.01.23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(이하 “본 교회”라 한다) 정관에서 위임된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 등 선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선교 위원회

제2조 (조직) 본 교회의 장단기 선교전략을 수립·실천하고, 원활한 선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 (구성) ① 위원은 선교국장, 재정총무국장, 장로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담임목사가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담당 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4조 (임원) ① 선교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선교국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·외 선교 정책의 수립 및 조정
2. 교회 개척
3. 선교사 해외 파송 및 후원
4. 국내·외 선교비 지원기관, 단체, 개인의 선정
5. 국내·외 선교비 정기·비정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결정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

②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, 참석인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3 장 교회 개척

제6조 (교회 개척의 지원 대상) 본 교회에서 교회 개척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개척
2.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전임으로 사역한 교역자 중 개척을 희망하고, 개척의 소명이 입증된 교역자가 추진하는 개척

제7조 (전략적 교회 개척) ① 본 교회가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는 개척목표, 절차, 추진방법, 조직 등 교회 개척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전략적 교회 개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. 추진위원회 위원은 운

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중직자회가 인준한다.

제8조 (교역자 교회 개척) ① 본 교회의 지원을 받아 개척을 희망하는 교역자는 교회 개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교회 개척 계획서, 개척 희망 지역, 목회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에 보고한다.

③ 교회개척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, 방법 등은 개척 희망 교역자의 능력과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, 중직자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제 4 장 선교사 해외 파송

제9조 (파송 선교사) ① 선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한 교역자
2.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입증된 평신도로서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자
3. 현지사용 언어에 대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
4. 지속적으로 후원이 가능한 가족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후원교회를 확보한 자

② 선교사로 파송을 희망하는 교역자는 본 교회에 선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선교계획서와 선교사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에 보고한다.

③ 선교사의 파송 결정과 지원 규모, 방법 등은 파송을 희망하는 교역자의 능력과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, 중직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 (후원 선교사) 선교사의 후원은 본 교회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교리를 인정하고,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의 선교훈련원 또는 타 교단이 인정한 선교훈련기관에서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후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.

제11조 (파송 절차) ①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의 자문을 받아 선교사를 파송한다.

② 선발된 선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의 선교훈련원 또는 교단이 인정한 선교훈련기관에서 소정의 훈련을 받은 후 파송한다.

제12조 (파송 선교사의 관리) ① 본 교회는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,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선교사는 본 교회로 분기 1회 정기 선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에게 경고 또는 본국으로 소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
2. 현지에서 선교목적 이외의 사안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자
3.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와 본교회의 선교정책에 반한 행위를 한 자
4. 기타의 사유로 해외 선교활동을 계속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

## 제 5 장 선 교 지 원

제13조 (국내 선교) ① 지원대상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기관, 미자립 교회, 봉사단체 등으로 한다.

② 정기 선교비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방법 등은 매년 1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부정기 선교비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4조 (해외 선교) ① 파송 선교사의 정기 선교비 지원금액과 방법은 매년 1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파송 선교사가 질병치료차 입국 시에는 항공료와 진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파송 선교사가 안식년(4년 1회)으로 입국 시에는 항공료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부정기 선교비는 선교사의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금액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⑤ 파송 선교사 자녀교육비를 선교지역의 초, 중,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후원 선교사의 지원 금액과 방법은 매년 12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제 6 장 보 칙

제15조 (기타 사항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항은 관례를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6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발의하고, 운영위원회 및 중직자회 의결로 개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월 23일 제정하고, 즉시 시행한다.